

# 신광은 형법 하프모의고사 05회

월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랑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bes.net

## 신광은 형법 1일1제 복습자료

2021. 08. 07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홍평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0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어 현지 법률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 ②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범죄행위는 범죄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된 상태로써 주관적·내부적인 의사와 객관적·외부적인 표현(동작)을 그 요소로 하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지는 「형법」 제2조(국내범)가 적용되는 범죄지로 볼 수 없다.
- ④ 형법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번 해설] 1일1제 81일차\_02월08일(월) [형법의 적용범위]

해설링크: <https://han.gl/oEc50>



1일1제 해설 QR코드

0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은 살인, 낙태에 대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방위행위, 피난행위 그리고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범의를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번 해설] 1일1제 40일차\_12월11일(금) [위법성조각사유]

해설링크: <https://han.gl/pGbY7>



1일1제 해설 QR코드

0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물손괴죄는 논외로 함)

경찰관 甲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甲은 해당 주소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신고자와의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사태의 급박함을 감지한 甲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소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비명소리는 평소 귀가 어둡던 A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던 것으로 실제 가정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 甲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 ② 위의 사안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문제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③ 고의의 이종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 심정반가치적 요소가 없어 책임고의는 탈락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④ 판례는 甲이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번 해설] 1일1제 104일차\_03월18일(목) [위전착]

해설링크: <https://han.gl/jivB1>



1일1제 해설 QR코드

04.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 ③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B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주식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B가 甲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주식회사의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甲의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 ④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영득의 의사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광은 형법 하프모의고사 05회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bes.net

## 신광은 형법 1일1제 복습자료

2021. 08. 07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홈페이지 <http://www.hunzzang.com>

### [4번 해설] 1일1제 91일차\_02월24일(수) [형형]

해설링크: <https://han.gl/iSPhf>



1일1제 해설 QR코드

### 05.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 ④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5번 해설] 1일1제 64일차\_01월14일(목) [배임죄]

해설링크: <https://han.gl/IFe7t>



1일1제 해설 QR코드

### 0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③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채권자의 채권이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6번 해설] 1일1제 137일차\_05월05일(수) [강제집행면탈죄]

해설링크: <https://han.gl/HBCto>



1일1제 해설 QR코드

# 신광은 형법 하프모의고사 05회

신광은 경찰학원

노랑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bes.net

## 신광은 형법 1일1제 복습자료

2021. 08. 07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http://www.hunzzang.com>

0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③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허위공문서작성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므로 작성권한이 없는 기안담당 공무원 갑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한이 있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갑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7번 해설] 1일1제 69일차\_01월21일(목) [문서]

해설링크: <https://han.gl/DwPsW>



1일1제 해설 QR코드

08. 다음 설명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 ③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 ④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8번 해설] 1일1제 196일차\_07월27일(화) [위계공무집행방해]

해설링크: <https://han.gl/Q85Qk>



1일1제 해설 QR코드

09. 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점 개업식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해라’고 말할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진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범인도피죄는 그 자체로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면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며,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9번 해설] 1일1제 113일차\_04월01일(목) [범인은닉,범인도피]

해설링크: <https://han.gl/4LFUT>



1일1제 해설 QR코드

# 신광은 형법 하프모의고사 05회

신광은 형법 하프모의고사 05회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bes.net

## 신광은 형법 1일1제 복습자료

2021. 08. 07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혼팍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10.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범죄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인 공범자만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위증죄에 있어서 형의 감면 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한다는 것이고,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10번 해설] 1일1제 98일차\_03월05일(금) [위증과 무고]

해설링크: <https://han.gl/AiWBh>



1일1제 해설 QR코드

[유튜브 신광은 교수님 형사법 TV 채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